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33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한지아 · 고동진 · 배준영
이주영 · 박성훈 · 서일준
이상휘 · 김재섭 · 조은희
우재준 의원(10인)

제안이유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에 대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준수 의무를 강화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하
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전문적인 응급의
료 정책 연구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보 수집·분석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응급환자 수용 문의에 대해 병원이 거부 또는 기피 할 수 있는 정
당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적절하고 신속하게 환자
에게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이송하게
하고, 선의의 응급의료종사자가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을 과

도하게 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신설함(안 제25조).
- 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가 응급의료정책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25조의2).
- 다. 중앙응급의료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역할을 명시함.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병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정당한 사유 증빙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 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 함(안 제6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운영 및 관리에 관한”을 “운영·관리·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9의2.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분류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②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제3호,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의 운
영자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
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응급환자”를 “응급의료상황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응급환자”로,
“한 보건복지부령”을 “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한 지역 응
급의료 이송체계와 제3항에 따른 사전고지 확인 등을 포함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정당한”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
을 통보”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자료를 중
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전력 및 통신 등의 장애로 검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
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심신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지체 없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 해소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응급환자 이송체계 <u>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u>	9. ----- <u>운영·관리·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u> -----
<u><신 설></u>	9의2.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제3호,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및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

---.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의 운영자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의료상황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 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응급환자 ----- 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한 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제3항에 따른 사전고지 확인 등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
-----.

② -----
-----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
-----.

1.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전력 및 통신 등의 장애로 검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중
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
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
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
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
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
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

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응급환자를 수용하
는 것이 응급환자의 생명 또
는 심신에 중대한 위해를 끼
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지체
없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발
생한 상황이 해소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응급
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

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 (減輕)하거나 <u>면제할 수 있다.</u> ② (생 략)	----- ----- ----- ----- <u>면제한다.</u> ② (현행과 같음)
---	---